

의안번호	2204009
의 퇴 인	박범계 의원
회 답 일	2024. 9. 27.
추 계 번호	24F3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2조제3항 (기술이전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 조정
2	안 제12조제4항 (특허 사업화에 따른 매출 소득에 대한 과세특 례)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2028년 말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벤처기업의 경우 50%)를 감면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2조제3항 (기술이전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안 제12조제4항 (특허 사업화에 따른 매출 소득에 대한 과세특 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가. 기술이전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감면율 상향 조정(안 제12조제3항)

□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경우 재정수입의 감소가 예상됨

○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특허권등은 다음과 같음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과세특례의 대상에서 제외됨

□ 동 과세특례에 따른 최근 5년간 법인세 감면 실적은 2018년 300만원, 2022년 6,700만원 등 연평균 5,100만원 수준임

[표 1] 중소기업 기술대여에 따른 법인세 감면실적: 2018~2022년

(단위: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감면실적	3	89	13	82	67	5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 이전의 감면실적을 토대로 세액 감면율이 25%에서 50%로 상향조정될 경우 예상되는 세수효과는 2년간 총 2억원(연평균 1억원)일 것으로 예상됨

- 매년 중소기업 기술대여에 따른 법인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불규칙하므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되, 감면율이 상향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연평균 감면실적에 50/(기존 감면율=25)를 곱하여 추계

[표 2] 법인세 감면액 추정: 2025~2026년

(단위: 억원)

	2025	2026	누적	연평균
기술이전 대여에 대한 감면율 상향조정(안 제12조제3항)	1	1	2	1

- 따라서 기존 실적을 바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경우 개정안에 따라 감면율을 상향조정하더라도 예상되는 세수효과가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전망되므로,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나. 중소기업·벤처기업특허 사업화에 따른 매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안 제12조제4항 신설)

-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하거나 내국인으로부터 대여받은 특허권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2028년 말까지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벤처기업의 경우 50%)를 감면할 경우 재정수입의 감소가 예상됨
- 그런데 가용 정보가 미비하고, 과세대상이 불분명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 및 용역의 범위와 매출액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
 -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부재로 추계가 곤란
 - 또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 및 용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의 파악 곤란
- 따라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하거나 대여받은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 판매에 따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